호남지방데이터청 제2026 - 148호

[제주]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에서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3. 9.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근 무 장 소	채 용 구 분	채 용 인 원	계 약 방 법	채용기간	수당*	비고
제주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통계조사원)	1명	근로 계약	'26. 3. 25. ~ '26. 9. 25.	75,080원	인력 수급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 담당업무
통계조사	• 제주사무소 관할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내 현지 조사업무 수행 • 경상조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 (조사표 작성, 내용 검토 및 시스템 입력, 기타 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

3.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 보수

○ 일급 : 75,080원

○ 기타 : 법정수당(정액급식비 140천원, 표본관리비 200천원,
명절휴가비(설날/추석) 기본급 60%(대체기간제의 경우 공무직 1호봉 기준)

4. 채용방법

□ 전형별 점수 기준 (2025. 5. 1. 기준 적용)

(1차) 서류전형(100점)					(2차) 면접전형
통계조사경력	자기소개서	관할거주지	자격증	기타점수	면 접
25	60	5	5	5	100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서류전형(100점)**

○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점수(90점)

<table>
<tr><th>평가요소</th><th>배점
(90점)</th><th>내용</th></tr>
<tr><td>통계조사
경력</td><td>25</td><td>
<table>
<tr><td>1년6개월 이상</td><td>1년6개월 미만~1년</td><td>1년 미만~6개월</td><td>6개월미만</td><td>없음</td></tr>
<tr><td>25</td><td>18</td><td>12</td><td>6</td><td>0</td></tr>
</table>
* 통계조사관: 공고일 기준 3년이내 합산 경력(국가데이터처 및 공공기관 국가승인(협의) 통계 경력에 한함), 1개월 기준: 30일
</td></tr>
<tr><td>자 기
소개서</td><td>60</td><td>
<table>
<tr><td></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불량</td></tr>
<tr><td>현장조사
적격성
(40)</td><td>40~33</td><td>32~25</td><td>24~17</td><td>16~9</td><td>8~0</td></tr>
<tr><td colspan="6">▸ 문제해결 능력
•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와 통계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 응답자 설득, 출장 등 현장조사 수행이 가능한가?</td></tr>
<tr><td rowspan="2">발전
가능성
(20)</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불량</td></tr>
<tr><td>20~17</td><td>16~13</td><td>12~9</td><td>8~5</td><td>4~0</td></tr>
<tr><td colspan="6">▸ 발전가능성 및 직무자세
• 채용 직무에 대한 적극성이 있는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 의식, 공무수행원으로서의 자세가 적절한가?</td></tr>
</table>
</td></tr>
<tr><td>관할
거주지</td><td>5</td><td>- 주민등록등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활용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 채용부서 관할 지역</td></tr>
</table>

○ 자격증 점수(5점)

자 격 증	점수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5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 빅데이터분석기사, 국가공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국가공인 SQL,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 각 부서에서는 채용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여 탄력적 운용 가능

○ 기타 점수(5점)

항 목	점수	내 용	비 고
저소득층	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여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 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다자녀	2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북한이탈주민	2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장애인	3	- 장애인등록증소지자(장애인 제한경쟁시 점수 미부여)	

○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 기준

채용인원	서류전형 선발인원
1명	5배수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정성평가 점수 > 기타 점수 > 자격증 점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대 인원을 선발
- 위의 기준으로도 순위 구분이 안 될 경우는 선발 최대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합격 처리

□ 면접전형(100점,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조사원) 면접전형 세부 평가 기준

항목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	불량(E)
지식 · 창의력	25~21	20~16	15~11	10~6	5~0
설득 · 대화 · 발표	25~21	20~16	15~11	10~6	5~0
성실 · 의욕 · 책임	25~21	20~16	15~11	10~6	5~0
예의 · 품성	25~21	20~16	15~11	10~6	5~0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1,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련)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④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규정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단, 면접심사 평가표 내 동일 평가항목에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미흡' 또는 '불량' 평가시 불합격 처리함

5. 응시 자격요건(모두충족)

□ 전산처리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정한 장소(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관내)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 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6.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6. 3. 9.(월) ~ 2026. 3. 16.(월) 18:00**

□ 서류전형 : **2026. 3. 18.(수) 1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18.(수) 15:00 이후**

□ 면접일시 : **2026. 3. 20.(금) 10:00 부터**

□ 면접장소: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강당(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07호)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 20.(금) 15:00 이후**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http://mods.go.kr) 공지사항에 공고

※ 부서 실정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9.(월) ~ 2026. 3. 16.(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우편도 접수기간 내 접수장소에 도착한 경우만 가능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내에 접수 가능

○ 우편, e-mail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 접수장소 : 아래 참조

담당자	주 소	연 락 처
양윤지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한라동 509호	(전화) 064-728-5800 (메일) yangyj1018@korea.kr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필수, 붙임1)**

□ **자기소개서 1부(필수, 붙임2)**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동의서(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붙임4)**

□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필수, 붙임5)**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필수)**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표창 내역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제외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시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 채용서류(응시원서, 자격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반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20일간 신청을 받음

  ※ 청구기간: *2026년 4월 6일 ~ 2026년 4월 27일*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6. 3. 16.(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채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단,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 기간제근로자(경상업무): 휴일 또는 연(월)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함

□ **문의사항 :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채용담당자(064-728-5800)**

【붙임1】(필수)

국가데이터처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업무명	경상조사	분야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응시번호	공란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	
	주 소		
	e-mail		

일 반 경력사항 *증명서제출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자기소개서 등 기입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국가데이터처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국가데이터처(소속사무소 포함) 경력에 한하여 경력사항에 기입하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자격사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전산				
	기타				
※자격사항 **기입** 및 자격증 사본제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기 타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다자녀 양육자 □ 북한이탈주민 □ ※해당자 체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주 1」이중 취업(겸업)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경우 계약 해지
2」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응시원서 서식과 다르게 불필요한 내용 작성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붙임2】(필수)

국가데이터처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 (A4 1장 이내 작성)

※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문구 자제(출신학교, 출생지, 친인척 관계 등)

직 종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원)	지원부서	제주사무소	응시번호	공란

【자기소개】

- *작성방법) 지원동기, 본인의 장단점, 목표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개인 신상(출신학교, 출생지, 친인척 관계 등)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면 안됨*

【직무수행 역량】

- *작성방법) 업무경험(경력) 및 직무관련 활동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1. *업무에 필요한 경험, 경력, 또는 관련 지식 등*
  2. *통계조사 수행, 문제 해결 능력, 적극적인 자세 등*
  3. *공무수행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

성 명: (서명)

【붙임3】(필요시, 해당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가데이터처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장애인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 양육자 포함)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붙임4】 (필수)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이중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채용요건(자격·경력·학위 등), 채용우대 확인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학위·저소득·다자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비자 종류(외국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붙임6】 (필요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